

선	기관 의 장
람	

시 보

제36호 2023. 9. 6.(수)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3-274호 광양 성황1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지형도면
고

광양시 공고 제2023-27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광양시 공고 제2023-278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3-1919호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

광양시 공고 제2023-1921호 광양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

광양시 공고 제2023-1935호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8

광양시 공고 제2023-1937호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로 부과·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40

광양시 공고 제2023-1950호 광양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5

광양시 공고 제2023-1952호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3

규 정

광양시 규정 제441호 광양시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규정 61

광양시 규정 제442호 광양시 무가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66

회 람										
--------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 797-2323, 행정 2323)

광양 성황1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제2023-44호(2023. 8. 31.)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광양 성황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 9. 13.

광 양 시 장

1. 광양 성황1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조서 : 다음
2. 광양 성황1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광양시청 산단택지과(061-797-3187)에 비치하고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47,911	-	47,911	100.0	
주거 지역	소 계	5,093	증) 42,818	47,911	-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17	증) 40,549	40,566	84.7	
	제 3 종 일 반 주 거 지 역	5,076	증) 2,269	7,345	15.3	
녹지 지역	소 계	42,818	감) 42,818	-	-	
	자 연 녹 지 지 역	42,818	감) 42,818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m ²)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	광양시 성황동 산67-1번지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증) 40,549	주변 개발에 따른 개발압력이 예상되는 지역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명품아파트 공급으로 인구유입 유도 및 정주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	광양시 성황동 산24-9번지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증) 2,269	주변 개발에 따른 개발압력이 예상되는 지역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명품아파트 공급으로 인구유입 유도 및 정주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7	성황1지구 도시개발구역	광양시 성황동 산67-1번지 일원	47,911	-	47,911	전라남도 고시 제2022-534호 (2022.12.0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32	성황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양시 성황동 산67-1번지 일원	47,911	-	47,911	전라남도 고시 제2022-534호 (2022.12.01.)

3.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1) 도로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	280	5,665	1	280	5,665	-	-	-	-	-	-
중로	1	280	5,665	1	280	5,665	-	-	-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신설	중로	1	153	20	집산도로	280	대로2-4호선	중동 산24-9	일반도로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	중로 1-153	• 신설 - L=280m, B=20m	• 공동주택의 진·출입과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도로 신설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25	성황1 주차장	중동 1434-1일원	-	증) 3,196	3,196	-	1개소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25	성황1 주차장	• 신설 - A = 3,196㎡	• 거주민과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주차공급을 위하여 주차장신설

2)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89	성황1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중동 산24-6	-	증) 1,528	1,528	-	1개소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89	성황1 어린이공원	• 신설 - A = 1,528㎡	• 거주민과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신설

(2) 녹지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	증) 4,757	4,757	-	-
신설	150	성황1 경관녹지	경관녹지	중동 1434-1일원	-	증) 1,313	1,313	-	1개소
신설	151	성황1 완충녹지	완충녹지	중동 산67-18일원	-	증) 3,444	3,444	-	1개소

○ 녹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50	경관녹지	• 신설 - A = 1,313㎡	•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일상생활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
151	완충녹지	• 신설 - A = 3,444㎡	•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주거환경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6일

광 양 시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동천(지방하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시청로 33
	성명	광양시장(공원과)
점용지역	위치	광양읍 용강리 771-2번지 외 6필지 일원
	면적	3,032㎡
점용목적		토지의 점용
점용내용		동천 경관보도교 조성사업 현장사무실 축조 및 자재 야적
점용기간		2023. 9. 4. ~ 2024. 5. 31.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9. 6.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백학로 774 외 3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9. 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 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물번호부여 4건					
1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어치리 688-1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백학로 774	20230906	20081001	백학동으로 가는 길에서 명명
2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대죽리 1311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백양길 40-14	20230906	20081001	행정리명에서 인용
3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10, 10-3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개룡길 25-15	20230906	20081001	행정리명에서 인용
4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 0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4로 53 (황금동)	20230906	20211215	사업지구명에서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1일

광 양 시 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행정기구 이관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며, 효율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 조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삭제사항 반영(안 제3조, 제3조의4)
- 행정기구 이관 직제개편 사항 반영(안 제3조)
- 불필요한 용어·문장 정비(안 제3조의2, 제3조의4,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 구체적 명시 조항 신설(안 제9조)

3. 입법예고기간 : 2023. 8. 31. ~ 2022. 9. 20.(20일간)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 제출 방법: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전남 광양시 시청로33(중동), 주민복지과(우편번호 57785)
- 전 화: 061-797-3311
- 팩 스: 061-797-2594(팩스 송부 후 전화 요망)
- 전자우편: cuj990729@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 성	반 대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2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각각 “대표협의체”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읍·면·동 협의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하며, 제3조제2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읍·면·동 협의체”로 한다.

제3조제3항과 제4항 중 “공무원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제3항의 “중 각각”을 “각”, 제4항 중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부위원장은”을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3조의4 중 제목을 포함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읍·면·동 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호의 사람”, “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며”를 “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는 삭제한다.

제3조의4제4항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를 “읍·면·동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로 하고, “위원장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 협의체를”로, “그 업무”는 “업무”로 한다.

제4조 중 “제3조 및 제3조의2”를 “제3조 및 제3조의2, 제3조의4”로 하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읍면동 협의체 (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중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업무”로 한다.

제6조 중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각 협의체”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같은 조 제2항 중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을 “회의록을 작성·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근의 유급직원”을 “유급 상근직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 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같은 조 제3항의 “각 협의체의 회의는”을 “회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의 “실무위원장”을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록·작성”을 “작성·보관”이라고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을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2(협의회 기구) <u>지역보장협의체의</u>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위하여 실무협의회,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2. (생략) 3.“<u>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u>”란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 <u>경제복지국장</u>, 보건소장,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6. (생략) 7. 「<u>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u>」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중 대표성이 있는 사람	제2조의2(협의체 기구) <u>대표협의체</u> ----- -- <u>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u> (이하 “<u>읍·면·동 협의회</u>”라 한다) -----. 1.2. (현행과 같음) 3.“<u>읍·면·동 협의회</u>”----- ----- ----- -----. 제3조(구성) ①----- ----- ----- <u>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 ②----- ----- ----- ---<u>시민복지국장</u>----- ----- -----. 1.6. (현행과 같음) 7. <삭제>

8.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성이 있는 사람

③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각각 1명
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
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로 뽑는다.

제3조의2(실무협의체) ① (생략)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
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 팀장 및 실무분과 분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3조의4(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
의체) ① 읍·면·동 지역의 위기가
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
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면·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8. 읍·면·동 협의체 -----

③----- 당연직
----- 각 --
-----.

④당연직 -----
-----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은 위촉-----
-----.

제3조의2(실무협의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

제3조의4(읍·면·동 협의체) ①-----

----- 읍·면·동
협의체 -----.

②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4. (생략)

③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4. (생략)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④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은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위원장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참여한다.

⑥ 시장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

② 읍·면·동 협의체-----
-----.

1.4. (현행과 같음)

③ 읍·면·동 협의체는 -----
----- 각
호의 사람 -----
-----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

1.4. (현행과 같음)

<삭제>

④ 읍·면·동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

⑤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 협의체 ----- 업무
-----.

⑥ ----- 읍·면·동
협의체 -----
-----.

⑦ 읍·면·동 협의체-----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의 명단을 광양시 시보 및 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에는 실무협의체위원을,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에는 실무협의체위원 및 실무분과의원, 읍면동 협의체에는 읍면동 협의체

를

제4조(위원명단 공개) -----
----- 제3조
및 제3조의2, 제3조의4 -- 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읍면동 협
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 업무
-----.

제6조(위원의 임기) ① -----

----- 각 협의
체 -----

-----.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

----- <삭 제>

위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
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해당 협의체의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③대표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
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
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
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
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
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위원장
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

②-----
----- 회의록을 작성·

보관-----
-----.

③-----
----- 유급 상근직원-----
-----.

제9조(회의) ①시장 또는 각 협의체
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
집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회의는 -----

-----.

④-----

-----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

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 <u>작성·보관</u> -----.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u>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u>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 <u>각 협의체 위원장</u> -----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광양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회의 수당) ----- ----- ----- ----- <u>범위에서</u> ----- ----- ----- ----- -----.

광양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1일

광 양 시 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현행 조례의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정비(안 제1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 제6조)
- 불필요한 용어·문장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3. 입법예고기간 : 2023. 8. 31. ~ 2022. 9. 20.(20일간)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 제출 방법: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전남 광양시 시청로33(중동), 주민복지과(우편번호 57785)

- 전 화: 061-797-2774

- 팩 스: 061-797-2594(팩스 송부 후 전화 요망)

- 전자우편: dhqkd@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광양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뜻은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법”으로 한다.

제3조 중 “재향군인의”를 “광양시 재향군인(이하 “재향군인”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4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제목 중 “예산지원”을 “지원”이라고 하며, 제목 외 본문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과 “사업에 대하여”는 각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로 한다.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2.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3.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제1항 중 “제6조”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향군인회는”을 각각 “제5조”와 “재향군인회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향군인회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8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목적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	군인회법」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이하“법”이라 한다)-----	
2.“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	군인회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광양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2.-----	법-----	
제3조(시민의 협력) 광양시민은 국	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광양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민의 협력)-----	-----	
제4조(예우) 광양시장(이하“시장”이	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	제4조(예우)	-----	

다.

1.2. (생략)

3. 기타 재향군인의 공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6조(지원대상사업) 시장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

--.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제5조(지원) ----- 법 제16조제

2항에 따라 -----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

1.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2.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3.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제>

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향군인회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재향군인회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② ----- 경우에는-----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목적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을 개정하기 위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광양시장

1. 제정이유

자문기관의 성격·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
기관을 적극 대행함으로써,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안 제1조)

-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
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광양시의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 2. 위원회의 특성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
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나. 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 신설(비상설화, 대행)

-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조례」 제○○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광양시 총무과(061-797-321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 제출서식 : 붙임 참고

나. 제출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다.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시청 총무과
- 전자우편 : pkcom8847@korea.kr
- 팩 스 : 061-797-2579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광양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제2조(「광양시 시민장(市民葬)·시장(市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시민장(市民葬)·시장(市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3조(「광양시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4조(「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8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을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5조(「광양시 인권 기본 조례」의 개정) 광양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9조제2항 중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를 “위원장이”로 한다.

제6조(「광양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1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조(「광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8조(「광양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지역경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2조에 따른 협의회는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광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유통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자원봉사 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광양시 의로운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의로운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13조(「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4조(「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의 개정)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광양시 어르신행복도시 구현 노인복지 기본 조례」의 개정) 광양시 어르신행복도시 구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12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16조(「광양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7조(「광양시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6조와 제8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19조(「광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개정) 광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20조(「광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21조(「광양시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총무과장”을 “안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7조제1항과 제13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2조(「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3조(「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2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4조(「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건축 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25조(「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3조와 제15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6조(「광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조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27조(「광양시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28조(「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29조(「광양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양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먹거리 보장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30조(「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의 개정)
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8조제1항과 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2조(「광양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33조(「광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지역돌봄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34조(「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35조(「광양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13조제1항과 제16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6조(「광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제37조(「광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광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광 양 시 장

1. 조례명 :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문 변경으로 조례 일부 개정

3. 주요내용

○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 제3항 신설로 조례 일부 개정

〈현행〉

-제1조(목적)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제2조(과태료 부과 등)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개정〉

-제1조(목적)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

-제2조(과태료 부과 등)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

4. 입법예고기간

- 예고기간: 2023. 9. 4. ~ 9. 24.(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5. 의견 제출

- 제출일시 : 2023년 9월 24일 까지
- 제출방법 : 우편, 전자우편, 팩스, 직접방문
- 기재내용 : 주소·성명·전화번호·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기관 : 광양시장(보건행정과)
(주 소) 전남 광양시 인덕로 1100(광양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61-797-4007 (FAX) 061-797-4151
(전자우편) rudwls417@korea.kr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등)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

<u><개정></u>	<u><현 행></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등) ①과태료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 (생략) ③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 -----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등) ①과태료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 (생략) ③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 -----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광양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광 양 시 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도로법」의 미반영(개정)으로 자치법규 일부개정 이유로 조례를 정비하고, 2024년 정부합동평가 기획정비 대상으로 조례의 일부 조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조(목적)의 상위 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 조문 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3. 9. 5. ~ 2023. 9. 25.(21일간)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 도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 다. 의견 제출 방법: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전남 광양시 행정2길 5(중동) 5층, 도로과(우편번호 57785)
 - 전 화: 061-797-2908
 - 팩 스: 061-797-4185(팩스 송부 후 전화 요망)
 - 전자우편: eorb6252@korea.kr
-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광양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 성	반 대		

광양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적용할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u>적용할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u>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 ----- -----.

광양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본문

광양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한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자를 말한다.
 - 가. 주유소
 - 나. 주차장
 - 다. 자동차 정류장
 - 라. 자동차 수리장
 - 마. 자동차 세차장
 - 바.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영업장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원인자가 보도구역내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도로의 손피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이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를 받는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및 광양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허가를 받은 보도구역내 횡단차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광 양 시 장

1. 조 례 명 :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2. 개정 이유

-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수요 증가
-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에어로빅 및 요가로 한정되어 추가 프로그램 운영 불가

3. 주요 내용

- 제7조의2제1항 이용차량 운행 조항에 성황스포츠센터 추가 및 광양수영장, 광양실내체육관을 광양스포츠센터로 수정
- 제33조의2 강사초빙 조항 신설
- 제39조제1항제2,3호 휴무일에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연휴로 수정
- 별표2 전용료, 별표3 이용료, 별표7 수영장 이용료 수정 및
별표3-1 개인사물함 이용료, 별표9 강사선발 심사기준별 배점표 신설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3. 9. 5. ~ 2023. 9. 24.(20일간)

6.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양시장(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서식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락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라.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 (57768) 전남 광양시 성황도이로 66-22, 광양시청 체육과

2) 전화 : 061-797-3903

3) 팩스 : 061-797-3197

4) 전자우편 : dayng@korea.kr

7.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체육과(061-797-3903)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광양수영장, 광양실내체육관”을 “성황스포츠센터, 광양스포츠센터”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강사초빙) ① 사용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설날 및 추석 연휴

별표2, 별표3, 별표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이용차량 운행) ① 시장은 광양수영장, 광양실내체육관 및 광 양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을 이 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정된 노선 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탑승을 거부할 수 있 다.	제7조의2(이용차량 운행) ① ----- <u>성황스포츠센터, 광양스포츠센터</u> 및 ----- ----- ----- ----- ----- --.
1. ~ 4. (생략) <u><신설></u>	1. ~ 4. (현행과 같음) <u>제33조의2(강사초빙) ① 사용자의</u> <u>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u> <u>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u> <u>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u> <u>수 있다.</u>
제39조(휴무일) ① (생략) 1. 1월 1일 2. <u>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u> 3. <u>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u> 4. ~ 5. (생략)	제39조(휴무일) ① (현행과 같음) 1. 1월 1일 2. <u>설날 및 추석 연휴</u> 3. <삭제> 4. ~ 5. (현행과 같음)

현행

[별표2] 전용료(제22조 관련)

구분 시설명	사용시간	체육행사		체육행사외		비고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충실문화강화	오전 (09시~13시)	25,000	35,000	60,000	80,000	
	오후 (14시~18시)	25,000	35,000	60,000	80,000	
	주간 1일 (09시~18시)	50,000	70,000	120,000	160,000	
천연관다육구장	3시간 기준 (정규1개입)	150,000	200,000	250,000	300,000	
광양실내체육관 정광스포츠크린트 (다목적체육관)	오전 (09시~13시)	20,000	30,000	60,000	80,000	
	오후 (14시~18시)	20,000	30,000	60,000	80,000	
	야간 (18시~22시)	20,000	30,000	60,000	80,000	
	주간 1일 (09시~18시)	40,000	60,000	120,000	160,000	
광양국민체육센터 (광혜민체육관)	주간 1일 (일반)	90,000	60,000	100,000	140,000	
	주간 1일 (장애인단체)	15,000	25,000	50,000	70,000	
광양수영장 정광스포츠크린트 (수영장)	주간 1일	300,000	450,000	600,000	900,000	
민조관다육구장	3시간 기준 (정규1개입)	60,000	80,000	100,000	120,000	
롯데경기장	3시간 기준 (정규1개입)	-	-	20,000	30,000	1코트만
태니스장	주간 (2시간)	-	-	12,000	18,000	1코트만
	야간 (2시간)	-	-	16,000	24,000	
광도장	주간 1일 (4시간)	-	-	20,000	30,000	

[별표3] 이용료(제22조 관련)

구분 시설명	기준	개인		단체		비고
		일반 (성인)	장애인대상	일반 (성인)	장애인대상	
광양실내체육관	2시간당(1인)	600	400	500	250	
정광스포츠크린트 (다목적체육관)						
광양국민체육센터 (광혜민체육관)	체육관	2시간당(1인)	500	400	300	장애인 무료
	1일 이용	2,000	1,000	-	-	
	월 이용	25,000	13,000	-	-	
광도장	2시간당(1인)	1,500	-	1,200	-	
태니스장	2시간당 (주간)	1,500	750	1,200	600	
	(야간)	2,000	1,000	1,500	750	
광양수영장 정광스포츠크린트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	2시간당(1인)	2,000	1,000	-	
	탁구	2시간당(1인)	2,000	1,000	-	
	스쿼시	2시간당(1인)	3,000	3,500	-	
	헬스	2시간당(1인)	2,000	1,000	-	
	에어로빅	1개월	35,000	17,500	-	
	요가	1개월	54,000(주3회) 36,000(주2회)	27,000(주3회) 18,000(주2회)	-	
	다목적실	오전(4h)	40,000	20,000	-	
		오후(4h)	40,000	20,000	-	
	문화교실	오전(4h)	30,000	15,000	-	
		오후(4h)	30,000	15,000	-	
	태미나실	오전(4h)	50,000	25,000	-	
		오후(4h)	60,000	30,000	-	
	소모임실	오전(4h)	15,000	7,500	-	
		오후(4h)	15,000	7,500	-	

개정안

[별표2] 전용료(제22조 관련)

구분 시설명	사용시간	체육행사		체육행사외		비고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충실문화강화	오전 (09시~13시)	25,000	35,000	60,000	80,000	
	오후 (14시~18시)	25,000	35,000	60,000	80,000	
	주간 1일 (09시~18시)	50,000	70,000	120,000	160,000	
천연관다육구장	3시간 기준 (정규1개입)	150,000	200,000	250,000	300,000	
광양실내체육관 정광스포츠크린트 (다목적체육관)	오전 (09시~13시)	20,000	30,000	60,000	80,000	
	오후 (14시~18시)	20,000	30,000	60,000	80,000	
	야간 (18시~22시)	20,000	30,000	60,000	80,000	
	주간 1일 (09시~18시)	40,000	60,000	120,000	160,000	
광양국민체육센터 (광혜민체육관)	주간 1일 (일반)	30,000	50,000	100,000	140,000	
	주간 1일 (장애인단체)	15,000	25,000	50,000	70,000	
광양수영장 정광스포츠크린트 (수영장)	주간 1일	300,000	450,000	600,000	900,000	
민조관다육구장	3시간 기준 (정규1개입)	60,000	80,000	100,000	120,000	
롯데경기장	3시간 기준 (정규1개입)	-	-	20,000	30,000	1코트만
태니스장	주간 (2시간)	-	-	12,000	18,000	1코트만
	야간 (2시간)	-	-	16,000	24,000	
광도장	주간 1일 (4시간)	-	-	20,000	30,000	

[별표3] 이용료(제22조 관련)

구분 시설명	기준	개인		단체		비고
		일반 (성인)	장애인대상	일반 (성인)	장애인대상	
광양실내체육관	2시간당(1인)	600	400	500	250	
정광스포츠크린트 (다목적체육관)						
광양국민체육센터 (광혜민체육관)	체육관	2시간당(1인)	600	400	500	장애인 무료
	1일 이용	2,000	1,000	-	-	
	월 이용	25,000	13,000	-	-	
광도장	2시간당(1인)	1,500	-	1,200	-	
태니스장	2시간당 (주간)	1,500	750	1,200	600	
	(야간)	2,000	1,000	1,500	750	
광양수영장 정광스포츠크린트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	2시간당(1인)	2,000	1,000	-	
	탁구	2시간당(1인)	2,000	1,000	-	
	스쿼시	2시간당(1인)	3,000	3,500	-	
	헬스	2시간당(1인)	2,000	1,000	-	
	에어로빅	1개월	35,000	17,500	-	
	요가	1개월	54,000	27,000	-	
	다목적실	오전(4h)	40,000	20,000	-	
		오후(4h)	40,000	20,000	-	
	문화교실	오전(4h)	30,000	15,000	-	
		오후(4h)	30,000	15,000	-	
	태미나실	오전(4h)	50,000	25,000	-	
		오후(4h)	60,000	30,000	-	
	소모임실	오전(4h)	15,000	7,500	-	
		오후(4h)	15,000	7,500	-	

현행

개정안

[별표3] 이용료(제22조 관련)

[별표3] 이용료(제22조 관련)

구분		구분	개 정 안		단 계	비고
			일반 (승차)	장애인대상 (승차)		
광양시 스포츠센터	문화교실	초 (100원 - 12.7)	30,000	15,000	-	-
		중 (120원 - 38.7)	37,000	18,500	-	-
		고 (150원 - 22.7)	30,000	15,000	-	-
		대 (100원 - 12.7)	50,000	25,000	-	-
	세바사실	초 (150원 - 38.7)	42,000	21,000	-	-
		중 (180원 - 22.7)	40,000	20,000	-	-
		고 (180원 - 12.7)	15,000	7,500	-	-
		대 (120원 - 18.7)	14,000	7,000	-	-
	초보원실	초 (100원 - 22.7)	15,000	7,500	-	-
		중 (120원 - 18.7)	14,000	7,000	-	-
		고 (180원 - 22.7)	15,000	7,500	-	-
		대 (120원 - 18.7)	14,000	7,000	-	-

(비고) 1. 경구장 이용료는 테니스장을 준용한다.
2. 광양국민체육센터(장애인체육관) 시설의 장애인 투로는 중앙시에 등록된 장애인에 한하며, 공중(1~3급) 장애인외 동반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3. 청소년, 어린이, 유아, 경로우대자, 군인, 병역명분자, 예우대상자, 장애인, 유급자(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법적 할인 대상)를 감면 대상으로 한다.
4. 그린카드 소지자 해인이 광양실내체육관, 실황스포츠센터, 광양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일반(승차)만 해당된다.

<신 설>

[별표3-1] 개인사물함 이용료(제22조 관련)

구분		기 준	금 액	비고
세탁함		1개월	5,000 원	

현행

[별표7] 수영장 이용료(제22조 관련)

1. 단일형

○광양시 수영장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대상	수령			이주이로직 일 반
		일반성인	가임여성	김면대상	
광 양 시 수영장	1일 이용 (2시간 기준)	3,500 (단위 : 3,000)		2,000 (단위 : 1,500)	-
	1개월	80,000	50,000	30,000	40,000
	3개월	253,000	127,500	76,500	120,000

2. 연계형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대 상	수영+헬스, 수영+에어로빅	헬스+에어로빅	일 반
		일반성인	가임여성	
광 양 시 스포츠센터	1개월	80,000	72,000	60,000
	3개월	213,000	191,000	180,000

- (비고) 1. 수영장 이용료는 1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정수할 수 있다.
 2. 단일형 분기회원은 월 이용료의 15%를 감면한다.
 3. 수영 연계상품은 광양수영장만 해당하며 월회원 15%, 분기회원 25%를 감면한다. 다만, 다른 연계형 상품의 경우는 월 10,000원을 할인한다.
 4. 가임여성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또는 생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소견서 포함)를 제출한 여성을 말한다. 단, 13세~18세의 여성은 청소년 감면에 해당한다.
 5. 모든 프로그램에서 수영의 월 감습료 10,000원 별도이며 이는 감면되지 아니한다.
 6. 청소년, 어린이, 유아, 경로우대자, 군인, 병역영문가 여우대상자, 장애인, 유공자(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법적 할인 대상)를 감면대상으로 한다.
 7. 그린카드 소지자(개인)가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1일 이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8. 수영장 이용료에서 수영 외 프로그램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신 설>

개정안

[별표7] 수영장 이용료(제22조 관련)

1. 단일형

○광양시 수영장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대 상	수령			이주이로직 일 반
		일반성인	가임여성	김면대상	
광 양 시 수영장	1일 이용 (2시간 기준)	3,500 (단위 : 3,000)		2,000 (단위 : 1,500)	-
	1개월	80,000	50,000	30,000	40,000
	3개월	253,000	127,500	76,500	120,000

2. 연계형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대 상	수영+헬스, 수영+에어로빅	헬스+에어로빅	일 반
		일반성인	가임여성	
광 양 시 스포츠센터	1개월	80,000	72,000	60,000
	3개월	213,000	191,000	180,000

- (비고) 1. 수영장 이용료는 1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정수할 수 있다.
 2. 단일형 분기회원은 월 이용료의 15%를 감면한다.
 3. 수영 연계상품은 광양수영장만 해당하며 월회원 15%, 분기회원 25%를 감면한다. 다만, 다른 연계형 상품의 경우는 월 10,000원을 할인한다.
 4. 가임여성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또는 생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소견서 포함)를 제출한 여성을 말한다. 단, 13세~18세의 여성은 청소년 감면에 해당한다.
 5. 모든 프로그램에서 수영의 월 감습료 10,000원 별도이며 이는 감면되지 아니한다.
 6. 청소년, 어린이, 유아, 경로우대자, 군인, 병역영문가 여우대상자, 장애인, 유공자(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법적 할인 대상)를 감면대상으로 한다.
 7. 그린카드 소지자(개인)가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1일 이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8. 수영장 이용료에서 수영 외 프로그램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9] 강사선발 심사기준별 배점표 (제34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및 배 점		비 고
총 계 (100)	세 부 항 목		배 점
	100		100
	○ 대학 이상 졸업(졸업예정) 증명		15
전 문 성 (15)	○ 전문대학 이상 졸업(졸업예정) 증명		13
	○ 관련교육기관 수료	1년 이상	11
		3개월 - 1년 미만	9
		3개월 미만	5
관 련 분 야 (15)	○ 5년 이상		15
	○ 3년 이상 - 5년 미만		13
	○ 1년 이상 - 3년 미만		11
	○ 1년 미만		5
관 련 분 야 (10)	○ 해당분야 국가공인자격증 해당분야 자격증 1급 이상 소지자		10
	○ 해당분야 민간자격증 해당분야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8
	○ 해당분야 수료증 그 밖의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8
	○ 100% 인정		70% 인정
수 상 경 력 (10)	○ 전국(대회) 이상	대 상	10
		우수 입상	9
		합 격	8
		대 상	7
	○ 도(대회) 이상, 그 밖의 그 밖의 대회	우수 입상	6
		합 격	5
		대 상	4
		우수 입상	3
개 주 지 (10)	○ 대회(대회) 이상	대 상	10
		우수 입상	9
		합 격	8
		대 상	7
개 주 지 (10)	○ 대회(대회) 이상	대 상	10
		우수 입상	9
		합 격	8
		대 상	7

- ※ 1개 항목에 여러 가지가 적용될 경우 각 항목별 점수 합계 1개만 적용
 ※ 통점자 처리 : 전년도, 지역, 수상경력, 관련경력 순으로 선별
 ※ 지원자가 1인인 경우에도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점수합계가 60점 미만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광양시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9월 6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규정 제441호

붙 임 : 광양시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규정

광양시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양시 또는 광양시장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소속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하여 광양시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회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민사소송·중재사건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과 소속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을 말한다.
2. “소송비용”이란 송달료, 인지대, 감정료, 출석비, 변호사 보수, 그 밖에 소송절차의 진행을 전후하여 시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출하는 일체의 비용 중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등을 통하여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3. “소송주관과장”이란 「광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3조에 따른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소송비용 회수 업무 수행부서) 소송비용의 회수 업무는 소송비용 회수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관장하는 소송주관과장이 수행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회수 절차) ① 소송주관과장은 승소 판결(상대방 소취하, 조정, 화해권고결정 등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 포함)이 확정되어 송

달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 제1심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의 경우 3개월 이내
2. 행정소송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한 후 소송비용 회수 지휘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②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송달료 등)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민사소송의 경우 7일 이내
2. 행정소송의 경우 7일 이내(3일 이내 소명 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즉시항고 지휘를 받아야 함.)

③ 소송주관과장은 소송비용액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기획예산실에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승소가 예상되는 소송이나 승소 확정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산가압류 등의 사전조치로 채권을 확보해야 하며, 채무자의 주거지를 항상 파악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채권을 발생 등록하고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세외수입(그외

수입-1)으로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3. 상대방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를 기한으로 독촉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제3호에 따른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집행문 부여 신청,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 압류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 받는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 또는 소득 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6. 소송비용을 회수한 때에는 세외수입(그외수입)으로 징수결의하여 납입하고 채권을 소멸 등록한 후 기획예산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회수 예외 사유) 소송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시장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3. 소송비용 회수에 드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이 경우, 「광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30조에
따른 소송심의회 의 심의 · 의결 필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시행일 당시 소송비용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에도 적용한다.

**광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9월 6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규정 제442호

붙 임 : 광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본청 · 의회사무국 · 직속기관 · 출장소 · 사업소 · 읍면동”을 “본청 · 의회사무국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동”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본청 실과 · 의회사무국 · 직속기관 · 출장소 · 사업소 · 읍면동”을 “본청 실과 · 의회사무국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동”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하고 있는 정원 외의 무기계약근로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1]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현황

부서별	계	행정사무원				기술사무원					청원 경찰	비 고
		소계	단순조무	비서요원	사업보조원	소계	청소요원	관리요원	현업요원	도로보수원		
총계	438	236	114	8	113	164	4	139	11	10	38	
본청 소계	155	90	67	4	19	52	1	40	1	10	13	
기획 예산실	3	3	3			0						*예산프로그램 및 법령집관리1 *시흥보물컴퓨터그래픽편집1 *성과관리 자체평가보조1
홍보 통신회	3	3	3			0						*기자실운영1 *SNS홍보1 *전산장비관리1
총무과	16	11	8	3		0					5	*비서실3 *기록물DB구축2 *각종인사자료DB구축1 *인쇄공1 *복무관리DB구축1 *문서사송및배부1 *고향사랑기부제운영1 *직소민원처리1 *시설물경비5
세정과	1	1	1			0						*고지서 송달1
징수과	5	4	1		3	1		1				*세외수입 D/B 구축1 *번호판영치1 *개별주택가격조사3
회계과	3	2	2			2		1				*청사전기 관리1 *회계결산업무보조1 *청사시설물관리1
민원 접과	11	11	7		4	0						*통합민원발급4 *새주소사업도로명DB구축1 *공시지가조사4 *차량등록업무보조1 *부동산실거래업무보조1
주복 지과	11	10			10	1		1				*의료급여관리2 *통합사례관리4 *자원봉사관리3 *OK생활민원관리1 *보훈단체맞회관관리1

부서별	계	행정사무원				기술사무원					청원 경찰	비고
		소계	단순조무	비서요원	사무과조원	소계	청소요원	관리요원	현장여원	노무과수원		
노인 장애인과	14	1	1			13		13				*노인복지회관운영 및 관리요원5 *노인회관관리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회복지사7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1
투 경 제 과	4	2	1	1		1		1			1	*시장관리요원1 *방문민원안내1 *광양사랑상품권운영지원1 *시설물경비1
청 년 일자리과	3	3	3			0						*일자리센터상담사1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보조1 *청년정책사업 지원1
철 강 항 만 과	1	0				1		1				*수산업무보조1
디 지 털 정 보 과	4	4	2		2	0						*GIS DB구축 및 갱신업무보조2 *전화 교환원2
관 광 과	3	2	2			1		1				*관광문화해설안내1 *관광단지조성 보상업무보조1 *관광업무보조1
문 화 예 술 과	3	1	1			1		1			1	*문화재관리1 *문화도시조성 지원1 *시설물경비1
체 육 과	19	7	7			8	1	7			4	*체육행사지원보조1 *체육시설관리7 *수영장 운영6 *체육시설물 청소1 *시설물경비4
환 경 과	3	3	3			0		0				*수변구역사업 지원2 *환경개선부담금자료관리1
자 순 원 환 과	2	1	1			1		1				*무단투기단속원1 *오수처리시설점검원1
안전과	18	18	18			0						*재난안전관리종합상황실보조1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17

부서별	계	행정사무원				기술사무원					청원 경찰	비 고
		소계	단순조무	비서요원	사무과조원	소계	청소요원	관리요원	현장여원	노무과수원		
도시과	1	0				1		1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1
건설과	4	1	1			1		1			2	*보상업무 보조1 *하천정용인허가업무지원1 *시설물경비2
도 로 과	16	2	2			14		3	1	10		*수로원10 *하천퇴적토준설굴삭기운전원1 *과적제한차량지도단속2 *노상적치물단속1 *도로사용료징수1 *자전거유인인증센터운영1
교 통 과	7	0				7		7				*과태료고지서부과 및 징수보조1 *불법주정차계도단속5 * 시내버스 노선 및 승강장 관리1
의 사 회 국 사 무	6	5	4	1		0					1	*방문민원안내2 *비서실1 *시의회홈페이지관리1 *전산,통신장비관리1 *시설물경비1
직 속 기 관 소 계	105	74	7	1	66	31	0	31	0	0	0	
보 위 건 생 과	5	5		1	4	0						*방문민원안내1 *임상병리검사지원1 *예방접종및전산등록1 *결핵환자관리1 *감염병관리1
건 증 진 강 과	35	35			35	0						*의과 진료보조4 *주민건강증진센터건강.영양.절주상담2 *주민건강증진센터물리치료1 *금연클리닉운영4 *건강생활실천운동.영양지도3 *정신건강센터8 *국가암,희귀난치성업무지원1 *치매안심센터운영12
출 보 건 생 과	5	5			5	0						*한방진료보조1 *난임부부지원,출산지원3 *영양플러스사업1

부서별	계	행정사무원				기술사무원					청원 경찰	비고
		소계	단순조무	비서요원	사업관리조원	소계	청소요원	관리요원	원정요원	노무관리수원		
도 보 건 시 과	22	22			22	0						*방문건강관리16 *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6
농 정 책 과	6	2	2			4		4				*방문민원안내1 *귀농귀촌상담요원1 *유기동물포획전담요원2 *백운제농촌테마공원운영2
농 유 통 과	4	2	2			2		2				*농산물종합가공장 운영2 *농산물홍보판촉지원1 *생활개선교육장운영1
스 마 트 예 과	1	1	1			0						*매실관련 자료 관리1
산 소 득 과	3	0				3		3				*숲길 등산지도 및 조사업무2 *숲가꾸기자원조사단1
기 보 급 과	24	2	2			22		22				*미생물비료 생산시설 관리2 *시가지꽃가꾸기사업7 *농기계수리5 *실험실검정업무3 *원예작물실증시험업무4 *병해충진단·예찰담관리1 *농업기술상담지원1 *농산물안전분석실운영1
사 업 소 계	154	63	32	3	28	74	3	61	10	0	18	
교 육 청 소 년 과	3	3	2	1		0						*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1 *평생학습지원1 *방문민원안내1
아 보 육 동 과	13	13	5		8	0						*장난감도서관운영3 *드림스타트운영지원1 *아동통합사례관리5 *아동보호전문요원2 *보육재단운영지원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1
여 가 족 과	22	20			20	1	1				1	*지역아동센터 방문학습 지도16 *취업설계사2 *취업상담원2 *유아수탁보호 및 여성문화센터청소1 *시설물경비1

부서별	계	행정사무원				기술사무원					청원 경찰	비고
		소계	단순조무	비서요원	사무과조원	소계	청소요원	관리요원	환경요원	노무과수원		
도서관과	27	19	19			3		3			5	*도서대출관리19 *기계시설물관리3 *시설물경비5
상수도과	26	2	1	1		16	2	14			8	*기계시설물관리2 *정수장시설물관리2 *검침원6 *요금전산처리1 *수도관누수탐사1 *마을상수도관리4 *방문민원안내1 *급수체적관리시스템관리1 *시설물경비8
하수도과	2	0				2		2				*하수관거시설물 관리1 *하수관거 유지관리시스템 관리 1
하수처리과	13	3	3			10		10				*기계시설물관리10 *수질실험연구3
생활폐기물과	12	2	2			10	0		10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9 *계근대관리2 *휠로더운전원1
공원과	7	0				7		7				*공원관리5 *공원관리지원1 *생태공원숲해설가1
녹지과	5	0				5		5				*가로수관리3 *녹지대및솔밭성관리2
시설관리과	4	0	0			4		4				*커뮤니티센터운영관리1 *분수대 유지관리2 *구룡산관리1
휴양림과	21	1	1			16		16			4	*숲해설사3 *휴양림및생태숲관리6 *세입징수보조및매표소관리1 *목재문화체험관운영5 *백운산치유의숲운영2 *시설물경비4

부서별	계	행정사무원				기술사무원					청원 경찰	비고
		소계	단순조무	비서요원	사무관리조원	소계	청소요원	관리요원	원장여원	노무관리수원		
읍면동 소계	17	4	4	0	0	7	0	7	0	0	6	
광양읍	10	1	1			7		7			2	*산업업무지원1 *서천체육공원관리2 *시가지꽃길조성5 *시설물경비2
중마동	4	2	2			0					2	*제증명발급보조1 *주민자치센터운영보조1 *시설물경비2
광영동	1	0				0					1	*시설물경비1
금호동	2	1	1			0					1	*주민자치센터운영보조1 *시설물경비1

【별지 제4호서식】

근로계약서

(제12조 관련)

광양시장(이하 “사용자” 이라 함)과 ○○○(이하 “근로자” 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무내용 :
 - “사용자” 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 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사용자” 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 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휴 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5. 휴 가
 - 휴가는 「광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6. 보 수
 - 보수는 기본급, 수당, 그 밖의 법정수당(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등으로 구성하며, 일당 단가는 “사용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보수지급 후 “근로자”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보수는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예금계좌번호 :)

7. 비밀유지의무

- “근로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8. 손해배상

- “근로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9. 보상책임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0.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 행정규칙 및 복무규율, 「광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사용자) 주 소 : 광양시 시청로 33

대표자 : 광 양 시 장 (인)

(근로자) 주 소 :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양시 <u>본 청 · 의회사무국 · 직속기관 · 출장 소 · 사업소 · 읍면동</u> ----- -----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양시 <u>본 청 · 의회사무국 · 직속기관 · 사업 소 · 읍면동</u> ----- ----- ----- -----.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 <u>본청 실과 · 의회사무국 · 직속기관 · 출장소 · 사업소 · 읍면동</u> -----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 <u>본청 실과 · 의회사무국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동</u>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현황												[별표 1]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현황												
부서별	계	행정사무원				기술사무원				청원경찰	비고	부서별	계	행정사무원				기술사무원				청원경찰	비고	
		소계	단순조무	비서요원	사업보조원	소계	청소요원	관리요원	현업요원					도로보수원	소계	청소요원	관리요원	현업요원	도로보수원					
총 계	438	235	114	8	113	165	5	139	11	10	38	총 계	438	236	114	8	113	164	4	139	11	10	38	
본소 청계	155	89	66	4	19	53	2	40	1	10	13	본소 청계	155	90	67	4	19	52	1	40	1	10	13	
기획예산실	3	3	3			0						기획예산실	3	3	3			0						*예산프로그램 및 법령집관리1 *시흥보물컴퓨터그래픽편집1 *성과관리자제평가보조1
전략정책실	1	1	1			0						전략정책실	1	1	1			0						*청년정책사업 지원1
홍보소통실	3	3	3			0						홍보소통실	3	3	3			0						*기자실운영1 *SNS홍보1 *전산장비관리1
총무과	16	11	8	3		0					5	총무과	16	11	8	3		0					5	*비서실3 *기록물DB구축2 *각종인사자료DB구축1 *인쇄공1 *복무관리DB구축1 *문서사송및배부1 *고향사랑기부제운영1 *직소민원처리1 *시설물경비5
세정과	1	1	1			0						세정과	1	1	1			0						*고지서 송달1
징수과	5	4	1		3	1		1				징수과	5	4	1		3	1		1				*세외수입 D/B 구축1

현행												개정안												
											*번호판영치1 *개별주택가격조사3												*번호판영치1 *개별주택가격조사3	
회계과	3	1	1			2	1	1			*청사전기 관리1 *회계결산업무보조1 *청사시설물관리1	회계과	3	2	2			2			1			*청사전기 관리1 *회계결산업무보조1 *청사시설물관리1
민원 지적과	11	11	7		4	0					*통합민원발급4 *새주소사업도로명DB구축1 *공시지가조사4 *차량등록업무보조1 *부동산실거래업무보조1	민원 지적과	11	11	7			4	0					*통합민원발급4 *새주소사업도로명DB구축1 *공시지가조사4 *차량등록업무보조1 *부동산실거래업무보조1
정보 통신과	4	4	2		2	0					*GIS DB구축 및 갱신업무보조2 *전화 교환원2	주민 복지과	11	10			10	1			1			*의료급여관리2 *통합사례관리4 *자원봉사관리3 *OK생활민원관리1 *보훈단체맞회관관리1
지역 경제과	4	2	1	1		1		1		1	*시장관리요원1 *방문민원안내1 *광양사랑상품권운영지원1 *시설물경비1	노인 장애과	14	1	1			13	0	13				*노인복지회관운영 및 관리요원5 *노인회관관리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회복지사7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1
투자 일자리과	2	2	2		0	0					*일자리센터상담사1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보조1	투자 경제과	4	2	1	1		1			1			*시장관리요원1 *방문민원안내1 *광양사랑상품권운영지원1 *시설물경비1
철강 항만과	1	0				1		1			*수산업무보조1	청년 일자리과	3	3	3		0	0						*일자리센터상담사1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보조1 *청년정책사업 지원1
주민 복지과	11	10			10	1		1			*의료급여관리2 *통합사례관리4 *자원봉사관리3 *OK생활민원관리1 *보훈단체맞회관관리1	철강 항만과	1	0				1		1				*수산업무보조1
노인 장애과	14	1	1			13	0	13			*노인복지회관운영 및 관리요원5 *노인회관관리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회복지사7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1	디지털 정보과	4	4	2		2	0						*GIS DB구축 및 갱신업무보조2 *전화 교환원2

현행												개정안													
관광과	3	2	2			1		1				*관광문화해설안내1 *관광단지조성 보상업무보조1 *관광업무보조1	관광과	3	2	2			1		1				*관광문화해설안내1 *관광단지조성 보상업무보조1 *관광업무보조1
문화예술과	3	1	1			1		1			1	*문화재관리1 *문화도시조성 지원1 *시설물경비1	문화예술과	3	1	1			1		1			1	*문화재관리1 *문화도시조성 지원1 *시설물경비1
체육과	19	7	7			8	1	7			4	*체육행사지원보조1 *체육시설관리7 *수영장 운영6 *체육시설물 청소1 *시설물경비4	체육과	19	7	7			8	1	7			4	*체육행사지원보조1 *체육시설관리7 *수영장 운영6 *체육시설물 청소1 *시설물경비4
환경과	3	3	3			0		0				*수변구역사업 지원2 *환경개선부담금자료관리1	환경과	3	3	3			0		0				*수변구역사업 지원2 *환경개선부담금자료관리1
자원순환과	2	1	1			1		1				*무단투기단속원1 *오수처리시설점검원1	자원순환과	2	1	1			1		1				*무단투기단속원1 *오수처리시설점검원1
안전과	21	19	19			0					2	*재난안전관리종합상황실보조1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17 *하천점용인가업무지원1 *시설물경비2	안전과	18	18	18			0						*재난안전관리종합상황실보조1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17
도시과	1	0				0		0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1	도시과	1	0				1		1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1
건설과	1	0				1		1				*보상업무 보조1	건설과	4	1	1			1		1			2	*보상업무 보조1 *하천점용인가업무지원1 *시설물경비2
도로과	16	2	2			14		3	1	10		*도로보수원10 *하천퇴적토준설굴삭기운전원1 *과적제한차량지도단속2 *노상적치물단속1 *도로사용료징수1 *자전거유인인증센터운영1	도로과	16	2	2			14		3	1	10		*도로보수원10 *하천퇴적토준설굴삭기운전원1 *과적제한차량지도단속2 *노상적치물단속1 *도로사용료징수1 *자전거유인인증센터운영1

현행												개정안											
교통과	7	0				7		7				*과태료고지서부과 및 징수보조1 *불법주정차계도단속5 * 시내버스 노선 및 승강장 관리1											
의회사무국	6	5	4	1		0					1	*방문민원안내2 *비서실1 *시의회홈페이지관리1 *전산,통신장비관리1 *시설물경비1											
직속기관소계	105	74	7	1	66	31	0	31	0	0	0												
보건위생과	5	5		1	4	0						*방문민원안내1 *임상병리검사지원1 *예방접종및전산등록1 *결핵환자관리1 *감염병관리1											
건강증진과	36	36			36	0						*의과 진료보조4 *주민건강증진센터건강.영양.절주상담2 *주민건강증진센터물리치료1 *금연클리닉운영4 *건강생활실천운동.영양지도3 *정신건강센터8 *국가암,희귀난치성업무지원1 *영양플러스사업1 *치매안심센터운영12											
통합보건과	10	10			10	0						*한방진료보조1 *난임부부지원,출산지원3 *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6											
도시보건의소	16	16			16	0						*방문건강관리16											
농업지원과	6	2	2			4		4				*방문민원안내1 *귀농귀촌상담요원1 *유기동물포획전담요원2 *백운제농촌테마공원운영2											
교통과	7	0				7		7				*과태료고지서부과 및 징수보조1 *불법주정차계도단속5 * 시내버스 노선 및 승강장 관리1											
의회사무국	6	5	4	1		0					1	*방문민원안내2 *비서실1 *시의회홈페이지관리1 *전산,통신장비관리1 *시설물경비1											
직속기관소계	105	74	7	1	66	31	0	31	0	0	0												
보건위생과	5	5		1	4	0						*방문민원안내1 *임상병리검사지원1 *예방접종및전산등록1 *결핵환자관리1 *감염병관리1											
건강증진과	35	35			35	0						*의과 진료보조4 *주민건강증진센터건강.영양.절주상담2 *주민건강증진센터물리치료1 *금연클리닉운영4 *건강생활실천운동.영양지도3 *정신건강센터8 *국가암,희귀난치성업무지원1 *치매안심센터운영12											
출생보건과	5	5			5	0						*한방진료보조1 *난임부부지원,출산지원3 *영양플러스사업1											
도시보건과	22	22			22	0						*방문건강관리16 *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6											
농업정책과	6	2	2			4		4				*방문민원안내1 *귀농귀촌상담요원1 *유기동물포획전담요원2 *백운제농촌테마공원운영2											

현행													개정안												
농산물 마케팅과	4	2	2			2		2					농산물종합가공장 운영2 *농산물홍보판촉지원1 *생활개선교육장운영1	농식품 유통과	4	2	2			2		2			농산물종합가공장 운영2 *농산물홍보판촉지원1 *생활개선교육장운영1
매 실 원예과	1	1	1			0							*매실관련 자료 관리1	스마트 원예과	1	1	1			0					*매실관련 자료 관리1
산 림 소득과	3	0				3		3					*숲길 등산지도 및 조사업무2 *숲가꾸기지원조사단1	산 림 소득과	3	0				3		3			*숲길 등산지도 및 조사업무2 *숲가꾸기지원조사단1
기 술 보급과	24	2	2			22		22					*미생물비료 생산시설 관리2 *시가지꽃가꾸기사업7 *농기계수리5 *실험실검정업무3 *원예작물실증시험업무4 *병해충진단·예찰답관리1 *농업기술상담지원1 *농산물안전분석실운영1	기 술 보급과	24	2	2			22		22			*미생물비료 생산시설 관리2 *시가지꽃가꾸기사업7 *농기계수리5 *실험실검정업무3 *원예작물실증시험업무4 *병해충진단·예찰답관리1 *농업기술상담지원1 *농산물안전분석실운영1
사업소 소 계	155	63	33	2	28	74	3	61	10	0	18		사업소 소 계	155	63	32	3	28	74	3	61	10	0	18	
교 육 보육과	4	4	4	0		0							*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1 *보육재단운영지원1 *평생학습지원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1	교 육 청년과	3	3	2	1		0					*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1 *평생학습지원1 *방문민원안내1
이동문화 도시과	11	11	3		8	0							*장난감도서관운영3 *드림스타트운영지원1 *아동통합사례관리5 *아동보호전문요원2	아 동 보육과	13	13	5		8	0					*장난감도서관운영3 *드림스타트운영지원1 *아동통합사례관리5 *아동보호전문요원2 *보육재단운영지원1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1
여 성 가족과	22	20			20	1	1				1		*지역아동센터 방문학습 지도16 *취업설계사2 *취업상담원2 *유아수탁보호 및 여성문화센터청소 *시설물경비1	여 성 가족과	22	20			20	1	1			1	*지역아동센터 방문학습 지도16 *취업설계사2 *취업상담원2 *유아수탁보호 및 여성문화센터청소 *시설물경비1

현행												개정안												
도서관 운영과	27	19	19			3		3		5	*도서대출관리19 *기계시설물관리3 *시설물경비5	도서관과	27	19	19			3		3		5	*도서대출관리19 *기계시설물관리3 *시설물경비5	
상수도과	26	2	1	1		16	2	14		8	*기계시설물관리2 *정수장시설물관리2 *검침원6 *요금전산처리1 *수도관누수탐사1 *마을상수도관리4 *방문민원안내1 *급수체적관리시스템관리1 *시설물경비8	상수도과	26	2	1	1			16	2	14		8	*기계시설물관리2 *정수장시설물관리2 *검침원6 *요금전산처리1 *수도관누수탐사1 *마을상수도관리4 *방문민원안내1 *급수체적관리시스템관리1 *시설물경비8
하수도과	2	0				2		2			*하수관거시설물 관리1 *하수관거 유지관리시스템 관리 1	하수도과	2	0				2		2			*하수관거시설물 관리1 *하수관거 유지관리시스템 관리 1	
하수 처리과	13	3	3			10	0	10			*기계시설물관리10 *수질실험연구3	하수 처리과	13	3	3			10	0	10			*기계시설물관리10 *수질실험연구3	
생활 폐물과	12	2	2			10	0			10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9 *계근대관리2 *홀로더운전원1	생활 폐물과	12	2	2			10	0			10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9 *계근대관리2 *홀로더운전원1	
택지과	1	1		1		0					*방문민원안내 1	공원과	7	0				7		7			*공원관리5 *공원관리지원1 *생태공원숲해설가1	
공원과	7	0	0			7		7			*공원관리5 *공원관리지원1 *생태공원숲해설가1													
녹지과	5	0				5		5			*가로수관리3 *녹지대및솔밭섬관리2	녹지과	5	0				5		5			*가로수관리3 *녹지대및솔밭섬관리2	

현행											
시설관리과	4	0	0			4		4			*커뮤니티센터운영관리1 *분수대 유지관리2 *구봉산관리1
휴양림사업소	21	1	1			16		16		4	*숲해설사3 *휴양림및생태숲관리6 *세입장수보조및매표소관리1 *목재문화체험관운영5 *백운산치유의숲운영2 *시설물경비4
읍면동소계	17	4	4	0	0	7	0	7	0	0	6
광양읍	10	1	1			7		7			2 *산업업무지원1 *서천체육공원관리2 *시가지꽃길조성5 *시설물경비2
중마동	4	2	2			0					2 *제증명발급보조1 *주민자치센터운영보조1 *시설물경비2
광영동	1	0				0					1 *시설물경비1
금호동	2	1	1			0					1 *주민자치센터운영보조1 *시설물경비1

개 정 안											
시 설 관 리 과	4	0	0			4		4			*커뮤니티센터운영관리1 *분수대 유지관리2 *구봉산관리1
<u>휴양림과</u>	21	1	1			16		16		4	*숲해설사3 *휴양림및생태숲관리6 *세입장수보조및매표소관리1 *목재문화체험관운영5 *백운산치유의숲운영2 *시설물경비4
읍면동 소 계	17	4	4	0	0	7	0	7	0	0	6
광양읍	10	1	1			7		7			2 *산업업무지원1 *서천체육공원관리2 *시가지꽃길조성5 *시설물경비2
중마동	4	2	2			0					2 *제증명발급보조1 *주민자치센터운영보조1 *시설물경비2
광영동	1	0				0					1 *시설물경비1
금호동	2	1	1			0					1 *주민자치센터운영보조1 *시설물경비1

[별지 제4호]

근로계약서

(제12조 관련)

광양시장(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별지 제4호]

근로계약서

(제12조 관련)

광양시장(이하 “사용자”이라 함)과 ○○○(이하 “근로자”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무내용 : ○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갑”은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휴 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5. 휴 가 ○ 휴가는 「광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6. 보 수 ○ 보수는 기본급, 수당, 그 밖의 법정수당(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등으로 구성하며, 일당 단가는 “갑”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보수지급 후 “을”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갑”은 “을”이 이미 지급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을”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무내용 : ○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휴 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5. 휴 가 ○ 휴가는 「광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6. 보 수 ○ 보수는 기본급, 수당, 그 밖의 법정수당(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등으로 구성하며, 일당 단가는 “사용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보수지급 후 “근로자”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보수는 “을”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예금계좌번호 :) 7. 비밀유지의무 ○ “을”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8. 손해배상 ○ “을”은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9. 보상책임 ○ “갑”은 “을”에 대하여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0.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 행정규칙 및 복무규율, 「광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주 소 : 광양시 시청로 33 대표자 : 광 양 시 장 (인) (을) 주 소 :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보수는 “<u>근로자</u>”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예금계좌번호 :) 7. 비밀유지의무 ○ “<u>근로자</u>”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8. 손해배상 ○ “<u>근로자</u>”는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9. 보상책임 ○ “<u>사용자</u>”는 “<u>근로자</u>”에 대하여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0.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 행정규칙 및 복무규율, 「광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u>사용자</u>) 주 소 : 광양시 시청로 33 대표자 : 광 양 시 장 (인) (<u>근로자</u>) 주 소 :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